

[별표 5]

개인안전장구 휴대기준(제23조관련)

1. 검색봉(절연용) 1개
2. 카라비너 5개
3. 로프(개인용) 1개
4. 안전벨트 1개
5. 8자하강기 1개
6. 방독면
7. 가죽장갑 1조
8. 손전등(연기투시용 랜턴) 1개
9. 공기호흡기 1조
10. 방호복 1착
11. 개인 안전장구 보관용 배낭 1개
12. 안전 헬멧 1개
13. 우의 1착
14. 만능도끼 1개
15. 방진 마스크 1개
16. 요대(장비 착용용) 1개
17. 다목적 칼 1개
18. 안전용 경보기 1개
19. 보호안경 1개